

영국사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영국 PCC는 조안나 라이딩이 「판도라」라는 제목으로 『인디펜던트』지가 지난 2006년 3월 8일자에 게재한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윤리강령 제3조(사생활 침해)를 위반했으며 또 제1조(정확성)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임신 하게 되면서 연극 배역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이 과거 배역에서도 임신 때문에 ‘막바지에’ 중도하차 했으며 ‘가족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불만신청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이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기도 전에 『인디펜던트』지가 이를 보도했고 이는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불만신청인이 임

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불만신청인의 매니저와 연극 프로듀서 두 명뿐이었고 불만신청인은 연극 중도하차 이유를 “예측치 못한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불만신청인은 후에 아기를 유산했다.

『인디펜던트』지는 불만신청인의 매니저에게 불만신청인이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불만신청인의 임신 사실이 공적 정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디펜던트』지는 기사에 대한 답변 편지가 온다면 이를 게재할 수도 있음을 비쳤고 웹사이트에 올린 기사를 삭제했다고 통보했다. 또한 PCC가 조사에 들어가자 『인디펜던트』지는 불만신청인에게 임신에 대해 보도한 것을 사적으로 사과하고 사과문을 게재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불만신청인은 이를 거절하고 PCC의 결정을 받겠다고 밝혔다.

PCC는 어느 정보가 알려져 있어 이를 참조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언론은 임신 12주가 지나지 않은 개인의 임신정보를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심하게는 유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가족에게 알리기도 전 그리고 아직 확실할 단계가 아님에도 임신 사실을 보도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봤다. PCC는 비록 『인디펜던트』지가 불만에 대한 답변으로 조치를 취했지만 윤리강령 제3조 위반에 대한 배상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했다.

한편 PCC는 불만신청인이 “막바지에” 배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인디펜던트』지의 주장이 입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PCC는 불만신청인이 한 회 공연되는 쇼에서 배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불만신청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프로듀서가 결정한 사안임을 명확히 밝힐 것도 요구했다. □

호주 사례 1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균형 있게 표현되지 않은
기사에 대한 불만은 인정할 수 있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세인 나이트가 『뉴 아이디어』 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불만신청인은 『뉴 아이디어』 지가 지난 2006년 8월 19일자 신문에 「잃어버린 딸」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호주 신문평의회에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비콘스필드 광산 붕괴사고에서 사망한 래리 나이트의 죽음과 그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 다루고 있다. 게재된 기사는 그의 딸인 로렌 키엘만의 관점으로 쓰여 졌는데 이 기사는 「래리 보내기」라는 나이트 가족의 관점으로 쓰인 다른 기사가 보도되고 두 달 후에 게재됐다. 나이트 가족은 두 달 전의 기사가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마지막 보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뉴 아이디어』 지가 보도한 8월의 기사는 특히 로렌의 매우 민감한 의견들이 담겨있었다. 기사에서 로렌은 그녀의 어머니에 비해 기부금과 비콘스필드 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 준비절차에서 다른 가족들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망한 광부의 남동생인 불만신청인은 로렌의 발언이 부정확한 주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사는

보도 전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로렌의 의견만을 담은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잡지사 측은 “자료를 따로 확인해 볼 기회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언론사는 자신들이 보도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불만의 대상이 된 잡지사가 후속 기사 등을 통해 불만신청인과 로렌의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였다. □

호주 사례 2

**다른 관점을 막지 않았다면
불만 제기를 인정할 수 없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Dr. 배리 워딩턴이 『선데이 타임즈』를 상대로 낸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의 기사는 호주 서쪽지역에서 위험한 속도위반을 하면서도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오토바이의 특성상 앞쪽만 찍는 속도 위반 카메라에 걸리지 않아 벌금을 물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주지사가 오토바이도 앞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의견을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을 늦추고 있다는 RAC의 주장을 담았다.

불만신청인은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활동을 억압하고 사실들을 잘못 전달하여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신문사가 기사 작성에 앞서

오토바이 협회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만신청인은 신문사는 다른 해결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운전자들이 앞 번호판을 부착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핵심은 과속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위험한 태도인데 경찰에 접수된 5개의 가장 위험한 과속사고를 표로 작성해 보여주고 있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주장대로 기사가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이 기사가 다른 관점을 억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불만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호주 사례 3

기사 제목이나 사진 등을 통해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신속히 정정되어야 한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전(前) 호주 방위 사령부 사령관 피터 코스그로브 장군이 『더 오스트레일리안』을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인정했다.

불만신청인은 더 오스트레일리안이 지난 2005년 12월 23일자 1면 「무단이탈한 코스그로브의 아들, 육군에서 방출되다」 제하의 기사에서 불만신청인의 아들인 데이빗이 “막사에서 무단이탈하고 영창에 구금된 후 육군 측으로부터 방출당했다”라고 보도하자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며 불만신청을 냈다. 불만신청인은 기자들이 “유명 인사가 아닌 개인의 일상적인 일에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사 측은 불만신청인이 호주 신문평의회로 불만신청을 낸 다음 날, 『더 워크엔드 오스트레일리안』에 「코스그로브, 군대의 아들을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호주 신문평의회로 보낸 불만신청인의 편지에 입각하여 작성된 이 기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의 내용을 반박하는 불만신청인의 진술을

담고 있다. 이 기사에는 불만신청인의 아들인 데이빗 코스그로브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행정적인 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전역 요청에 의해 제대한 것”이라는 군사령관 피터 레히 장군의 편지도 포함하고 있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과거에 사회 유명인사의 가족에 대한 보도가

대중적 관심사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었고 현재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주 신문평의회는 본 기사에 중대한 오류들이 있는 만큼 불공정과 부정확성에 대한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했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비록 몇몇 오류는 후속 기사에서 정정되었지만, 정정되지 않은 불공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특히 기사 제목과 불만신청인의 아들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가 무단이탈을 했다는 암시를 주었고 이는 불공정한 보도 태도라고 밝혔다. □

뉴질랜드 사례

명시적인 요청이 없다면 신문사로 보내진 독자의 편지는 신문사의 판단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C. E. 콘세다인이 『NZ 카톨릭』 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링턴 기독교 소속인 불만신청인은 『NZ 카톨릭』지가 지난 2006년 6월 18일자 「Christian Left to Meet」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문제의 기사는 위그햄 지역 하원의원이자 진보당 위원장인 짐 앤더튼의 카톨릭 신앙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불만신청인은 사건 신문의 매니저에게 편지를 보내 짐 앤더튼 하

원의원이 천주교도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불만신청인은 앤더튼 하원의원 스스로 신앙심이 깊지 않다고 말해왔으며 앤더튼 의원은 매춘, 낙태, 동성애에 대한 법률을 포함해 기독교의 교리에 맞는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니저에게 보내진 편지는 의견 청취를 위해 앤더튼 하원의원에게 보내졌고 앤더튼 하원의원의 답변이 2006년 7월 16 ~ 29일자 독자 편지란에 불만신청인의 편지와 함께 게재됐다.

이에 불만신청인은 지난 7월 17

일, 『NZ 카톨릭』지의 매니저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 신문사가 앤더튼 하원의원에 대해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천주교 신자라고 지칭했는지, 또한 어떠한 이유로 신문에 사적으로 보낸 자신의 편지를 앤더튼 하원의원에게 보내고 그 편지를 공개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불만신청인은 앤더튼 하원의원과 어떤 ‘악감정’은 없다고 말하고 신문사로부터 답변을 듣길 원했다.

『NZ 카톨릭』지의 편집장인 개빈 아브라함은 지난 7월 25일에, 불만신청인의 항의에 대한 답변으로 앤더튼 하원의원이 교회와 접촉한 공적 사실을 인용하고 신문에 보내는 편지는 따로 표시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로 간주되며 신문평의회가 편지에 ‘발표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는 발표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NZ 카톨릭』지는 불만신청인이 신분을 속이며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는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으며 앤더튼 하원의원이 천주교도인지 여부를 묻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기에 앤더튼 하원의원에게 문의한 것이고 불만신청인의 편지와 함께 앤더튼 하원의원의 답변을 게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신문사 측의 답변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다시 매니저에게 편지를 보내 신문사의 행동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또다시 신문사가 왜 앤더튼 하원의원을 천주교도라고 판단했으며 자신의 편지가 무슨 이유로 앤더튼 하원의원에게 보내졌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편집장은 앤더튼 하원의원에게 불만신청인의 편지를 보내고 그 답변을 공개한 것은 보통의 절차를 따른 것이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불만신청인은 뉴질랜드 신문평의회에 불만을 신청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의 편지를 허락 없이 앤더튼 하원의원에게 보낸 것과 신문사의 매니저에게 문의를 위해 보낸 편지를 애초부터 공개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신문사 측의 태도를 비난하고 “편지의 공개로 인해 큰 수치와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과 『NZ 카톨릭』지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비록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편지를 신문사의 매니저에게 보냈지만 특별히 신문에 게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나 표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편지를 ‘편집

장에게 보내는 편지’로 본 신문사의 입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유명인사에 관한 문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문사의 편집장이 앤더튼 하원의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보았다(앤더튼 하원의원은 불만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매춘 합법화를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어느 신문에서나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 매우 귀중한 포럼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신문사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명시적으로 ‘게재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편지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신문사로 오는 편지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수정하며 지면에 게재해 토론을 장려하는 것 등의 일을 만드는 것은 편집장의 특권이며 다만 이러한 특권으로 인해 특정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균형감과 공정성을 확실히 유지할 책임이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천주교에 대한 믿음의 문제는 신문평의회가 다루기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